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활동지원급여 비용 산정〉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38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03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12. 27.

(3) 회 부 일 : 2024. 12. 30.

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됨.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어도 말을 못 하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

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 비용 산정 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u>보건복지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 ----- ----- <u>「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임(참고자료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¹⁾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현행법령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참고 자료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 지급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 비용에는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최소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으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이 같은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정하기보다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① 활동지원급여 비용에는 활동지원지원력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활동지원급여 비용이 장애인 관련 각종 복지서비스 단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사업명	활동지원 단가 적용율
주간활동서비스	100%
방과후활동서비스	100%
최중증 주간 그룹형 1:1	15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활동지원)	100%
장애인 개인예산제	100%

□ 다만, 활동지원급여 비용은 종사자 처우개선,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특정 사업의 급여 비용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감독·평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²⁾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재원 조달’,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절한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도 현행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급여비용에 반영되도록 일반회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음.

급여비용 결정 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편성 절차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지원 급여비용의 산정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2011년부터 시행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 최소 약 60시간(1,000천원) ~ 최대 약 480시간(7,980천원)
 -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구분		급여량				
활동 지원 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7,980천원 (약 480시간)	7,481천원 (약 450시간)	6,983천원 (약 420시간)	6,485천원 (약 390시간)	5,986천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5,488천원 (약 330시간)	4,986천원 (약 300시간)	4,489천원 (약 270시간)	3,991천원 (약 240시간)	3,492천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2,994천원 (약 180시간)	2,495천원 (약 150시간)	1,997천원 (약 120시간)	1,499천원 (약 90시간)	1,000천원 (약 60시간)
	본인 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원(정액)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40,000원 ~ 209,200원)				
특별 지원 급여	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35천원~1,332천원(약 20~80시간) 최대 6개월				
	본인 부담	면제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구 분	대상자 (A)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합계	
		이용자 (B)	이용률 (C) (C=B/A)	이용자 (D)	이용률 (E) (E=D/A)	이용자 (F)	이용률 (G) (G=F/A)	이용자 (H)	이용률 (I) (I=H/A)
2020	118,125	99,784	84.5%	2,375	2.0%	241	0.2%	102,400	86.7%
2021	130,160	109,010	83.8%	2,714	2.1%	237	0.2%	111,961	86.0%
2022	142,159	117,894	82.9%	2,869	2.0%	230	0.2%	120,993	85.1%
2023	155,602	128,478	82.6%	2,987	1.9%	263	0.2%	131,728	84.7%
2024.6.	158,876	130,135	81.9%	2,755	1.7%	222	0.1%	133,112	83.8%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6,620원/시간('25년 기준)
- 예산 : ('24) 22,846억원(123,715명) → ('25) 25,323억원(132,715명, +9,000명 증)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1. 활동보조

분 류	월 한도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가산수당 3,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가산수당은 최종증 수급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추가로 지급

2. 방문목욕(※ 주 1회 원칙)

분 류	월 한도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6,48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7,970원

3. 방문간호(※ 주 3회 원칙)

분 류	월 한도액
① 30분 미만	41,71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원
③ 60분 이상	62,930원

자료: 「202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